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1월 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1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1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의한 띄어쓰기 반영

- 정의, 장사문화 개선 등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호, 제3조제2호, 제5조, 제24조, 제27조)
- “공설묘지”, “화장·납골” 을 “공설묘원”, “화장·봉안” 으로 변경함.
- 공설묘원 모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 을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으로 변경(안 제7조)
- 사용자 자격 범위 확대 및 용어 수정(안 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료의 반환 규정 신설(안 제17조)
- 평창군 공설묘지 표에 종류 추가 및 명칭, 위치, 면적 수정(안 별표1)
- 공설묘지에서 공설묘원으로 명칭변경. 시설의 종류를 공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하고 봉안시설에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를 포함하는 등 현 시설에 맞게 수정함.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m ²)
공설묘지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 평창군 공설장사시설 표에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추가 등 (안 별표2) -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관리비 등을 추가함.

□ 평창군 공설묘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공설묘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담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당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명순)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 를 “**분묘, 봉안담, 봉안당**” 으로 하며,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안 제30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5조(안 제27조)의 제목 “**(공원 내의 금지행위)**” 를 “**(금지행위)**”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 을 “**공설장사시설**” 로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530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6. 1. 19.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 가지번호를 넣어 최소한의 조 번호 이동 및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에서 봉안담과 봉안당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 를 “**분묘, 봉안담, 봉안당**” 으로 하며,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안 제30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5조(안 제27조)의 제목 “**(공원 내의 금지행위)**” 를 “**(금지행위)**”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 을 “**공설장사시설**” 로 한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를 “**분묘, 봉안담, 봉안당**”으로 한다.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안 제30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5조(안 제27조)의 제목 “**(공원 내의 금지행위)**”를 “**(금지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u>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u>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 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p> <p>② ~ ⑤ (생 략)</p> <p><u>제17조 ~ 제25조</u> (생 략)</p> <p><u>제26조</u> 삭제</p> <p><u>제27조(공원 내의 금지행위)</u>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6. (생 략)</p> <p><u>제28조 ~ 제30조</u> (생 략)</p>	<p>제7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u>분묘, 봉안담, 봉안당</u>----- ----- ----- ----- -----.</p> <p>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p><u>제16조의2 ~ 제24조</u> (개정안 제1 7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p> <p><u>제25조(금지행위)</u> <u>공설장사시설</u> - ----- -----.</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u>제26조 ~ 제28조</u> (개정안 제28조 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p>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1. 09.
- 회부일자 : 2026. 01. 12.
- 상정일자 : 2026. 01. 19.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의한 띄어쓰기 반영
- 정의, 장사문화 개선 등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호, 제3조제2호, 제5조,

제24조, 제27조)

- “공설묘지” , “화장·납골” 을 “공설묘원” , “화장·봉안” 으로 변경함.
- 공설묘원 모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 을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으로 변경(안 제7조)
- 사용자 자격 범위 확대 및 용어 수정(안 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료의 반환 규정 신설(안 제17조)
- 평창군 공설묘지 표에 종류 추가 및 명칭, 위치, 면적 수정(안 별표1)
공설묘지에서 공설묘원으로 명칭변경. 시설의 종류를 공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하고 봉안시설에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를 포함하는 등 현 시설에 맞게 수정함.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m ²)
공설묘지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 평창군 공설장사시설 표에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추가 등
(안 별표2) -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관리비 등을 추가함.

□ 평창군 공설묘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공설묘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담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당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사목에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제13조에서는 각각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설묘지 등의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 등 사용료·관리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의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장사시설 이용 편의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 기존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 인용 법률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및 시행령 표기를 삭제하였으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를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로 변경함.
- 안 제2조제1호에서 기존 “장사시설” 이라 함은묘지에서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로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공설공원묘지” 라 함은에서 “공설묘원” 이라 함은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공설 공원 공동묘지” 에서 “공설묘원·공동묘지” 으로 변경함.
- 안 제3조제2호에서는 “화장·납골” 에서 “화장·봉안” 으로, 안 제5조에서도 조문의 제목을 “납골시설” 에서 “봉안시설” 로 같은 조 제2항 “납골시설을” 을 “봉안시설을” 으로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변경하였음.

-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 각각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인용 법령의 조 번호를 명시한 후 “에 따라” 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에서는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로, 안 제8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호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7조에 따른” 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2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0조에 따른” 으로 변경함.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 ‘~에 의한/의하여/의한다’ 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에 따른/따라/따른다’ 로 바꾼다.
- ‘규정(規定)’ 은 ‘그 정하여 놓은 것’ 을 뜻하는 말인데 ‘제○조’ 에 ‘규정’ 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 을 생략할 수 있다.

- 안 제5조에서는 영 제15조 별표2의 개인묘지 설치장소 제한이 도로나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인용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의 용어 정의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및 신설을,
- 안 제6조제1호에서는 단서 조문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용 법률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7조의 제목을 “분묘의 설치기간”에서 “사용기간 및 연장 신청”으로 조문의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으로 변경하였으며, 가족봉안묘와 자연장지, 분묘 등의 사용기간과 연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의 별표1에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종류와 명칭 등을 추가·수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의 제목을 “사용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자격”으로 변경하였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자”를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 함.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사망한 자”와 “매장되어 있는자”를 각각 “사망한 사람”과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 자(者)가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쓰고,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때에는 ‘자’를 그대로 쓴다.

- 안 제10조제1호에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하는 자”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으로, 같은 조 안 제2호에서는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자” 에서 “평창군 공설묘원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사람” 으로 범위를 규정함.
- 안 제10조제5호에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자” 에서 “사망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사람” 으로, 같은 조 제7호와 제8호에서 “봉안시설” 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로 변경하였으며 제8호에서는 타 시설에 있던 유골함은 자연장지 또는 가족봉안묘에만 안치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 기존 제9호를 제10호로 바꾸고, 제9호에 가족봉안묘의 안치에 관해 신설함.
- 기존 제11조(묘지의 면적)와 제12조(분묘의 구조등)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사용권의 소멸에서 제1항제2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를 “제7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로 하고,
- 안 제16조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에서 기준과 사용료 등에서 명칭세분화 및 자연장지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에서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로 면제조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제3항제1호에서는 기존 인용 법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었기에[시행 2015. 7. 1.] 제7조(급여의 종류)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로 면제 대상을 확대함.
- 안 제17조에서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면서¹⁾ 종전 제17조에서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함.
- 안 제18조 사용자의 신고의무에서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신설하여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안 제27조에서는 고성방가, 음주 등 금지행위를 신설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문 규정의 정비 및 인용 법령의 조문번호 변경, 조문 신설 등을 통해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안 제7조제4항에 “분묘, 봉안담, 봉안당”의 사용기간 연

1)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2018.6.)를 통해 조례에 장사시설 사용의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 대하여 환불 규정 및 환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이행 실적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2019.1).

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만을 정하고 있고 “법 제19조”에는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 법령을 삭제하고, “봉안담과 봉안당”의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며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²⁾

□ 수정의견

제 출(안)	수정의견
<p>제7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u>법 제19조에 따라 분묘</u>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제7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u>분묘, 봉안담, 봉안당</u>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2) 현재 봉안담과 봉안당은 분묘와 동일한 사용기간 및 연장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 안 제17조에서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근거” 를 신설하면서 종전 제17조에서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조문 번호를 모두 개정하고 있으나,
안 제16조의2로 가지번호를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제24조까지 조 번호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제1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이하생략)

□ 수정의견

제 출(안)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수정의견

제16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신설

현행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조 번호는 같으며, 개정내용은 제출된 안 제18조~제25조와 같음.

제18조 ~ 제25조 (생략)

- 현행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안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개정하면서 현행 삭제된<2015.12.31.> 제25조와 제27조 중에, 제25조가 안 제26조되면서 <삭제>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미 없어진 조문을 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신설된

안 제27조(공원 내의 금지행위)를 안 제25조로 하고, 안 제28조 부터 안 제30조까지 각각 안 제26조부터 제28조로 하며, 개정내용은 제출안과 동일하게 하여³⁾ 조 번호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 수정의견

제 출(안)	수정의견
<p><u>제25조(운영위원회)</u> ① 장사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u>심의·조정하기</u> 위하여 평창군 장사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제10조에 따른</u>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2항 및 <u>제3항에 따른</u>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생 략) <p>③ (생 략)</p> <p><u>제26조 삭제</u></p> <p><u>제27조(공원 내의 금지행위)</u> 공원내에</p>	<p><u>제24조(운영위원회)</u> ① 장사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u>심의·조정하기</u> 위하여 평창군 장사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제10조에 따른</u>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2항 및 <u>제3항에 따른</u>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생 략) <p>③ (생 략)</p> <p><u>제25조(공원 내의 금지행위)</u>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p>

3) 안 제25조가 수정될 경우에는 수정조문 사용.

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 안의 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 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제28조(묘적부 등)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위임) (현행과 같음)

제3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 안의 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 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제26조(묘적부 등)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위임)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8조(시행규칙) (현행 제29조와 같음)

※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2024,<https://opinion.lawmaking.go.kr/lmKnlg/jdgStd/list>

(3) 가지번호 방식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새로운 조나 호가 신설되어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 할 경우,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신설되는 조나 호의 다음에 있는 조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개정 방식이다.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 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혹 이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지번호 방식에 따라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⁶⁸⁹⁾

689) 10개의 조로 된 법령에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3조를 신설하여 기존의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1조로 개정해야 하고 만약 조문의 내용에 제3조나 그 후의 조를 인용하는 경우에 이를 개정된 조번호로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지번호 방식을 사용하여 조를 신설하면 기존의 조문은 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 안 제27조(공원 내의 금지행위)에서 “공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개정안 제2조에서 “공설공원묘지”를 “공설묘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원”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명칭 및 위치) 별표1에서 공설묘원과 공동묘지를 공설장사시설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공원”을 “공설장사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며,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⁴⁾

4) 안 제27조가 안 제25조로 조 번호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번호 사용.

□ 수정의견

제 출(안)

제27조(공원 내의 금지행위) 공원 내
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수정의견

제27조(금지행위) 공설장사시설 내
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현행과 같음)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2018.6.]

□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근거 부재 지자체 현황

지자체명		조례명	지자체명		조례명
1	서울 성북구	장사등에관한조례	34	충남 청양군	추모공원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2	서울 종로구	장사등에관한조례	35	충남 태안군	공설영묘전운영조례
3	서울 중구	장사등에관한조례	36	전북 고창군	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
4	인천 강화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37	전북 무주군	장사등에관한조례
5	세종시	공설묘지등운영조례	38	전북 완주군	장사등에관한조례
		은하수공원설치및운영조례	39	전북 익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
6	경기 가평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0	전북 장수군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7	경기 고양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1	전북 전주시	장사등에관한조례
8	경기 광주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2	전북 정읍시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9	경기 구리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43	전북 진안군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10	경기 군포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44	전남 구례군	공설장묘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1	경기 성남시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45	전남 담양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12	경기 시흥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46	전남 목포시	추모공원설치및운영조례
13	경기 안성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7	전남 영암군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14	경기 안양시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48	전남 완도군	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15	경기 양평군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49	전남 장성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16	경기 의정부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50	전남 장흥군	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17	강원 고성군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51	전남 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18	강원 삼척시	추모공원등관리및사용조례	52	전남 해남군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19	강원 양구군	장사시설등의설치및운영조례	53	경북 경주시	종합장사공원경주하늘마루설치및운영조례
20	강원 양양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공설봉안당설치및사용조례
21	강원 영월군	공설묘지설치조례	54	경북 김천시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물미묘원 관리조례	55	경북 상주시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2	강원 철원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56	경북 성주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3	강원 춘천시	안식공원운영조례	57	경북 영덕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4	강원 태백시	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	58	경북 영양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5	강원 평창군	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59	경북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설치및운영조례
26	강원 홍천군	공설묘원설치및운영조례	60	경북 울진군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7	강원 횡성군	공설묘지관리운영조례	61	경북 의성군	장사등에관한조례
		공설납골당관리·운영조례	62	경북 칠곡군	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28	충북 진천군	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63	경북 포항시	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29	충남 계룡시	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64	경남 거제시	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0	충남 금산군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65	경남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31	충남 보령시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66	경남 김해시	추모의공원설치및관리조례
32	충남 아산시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67	경남 의령군	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33	충남 예산군	추모공원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68	경남 창녕군	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과제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마련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8개 지방자치단체	2018.1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바. (생략)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24. 1. 23.>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상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 ⑥ (생략)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구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구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 ⑦ (생략)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

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8. 29., 2020. 1.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 7.>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綠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생략)

4. 법인묘지 (생략)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2025. 10. 1.>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자연재해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2024. 1. 30.>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

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0. 2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⑧ (생략)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 2.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0
----------	-----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의한 띄어쓰기 반영

나. 정의, 장사문화 개선 등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호, 제3조제2호, 제5조, 제24조, 제27조)

“공설묘지”, “ 화장·납골” 을 “공설묘원”, “ 화장·봉안” 으로 변경함.

다. 공설묘원 모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 을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으로 변경(안 제7조)

라. 사용자 자격 범위 확대 및 용어 수정(안 제10조)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료의 반환 규정 신설(안 제17조)

바. 평창군 공설묘지 표에 종류 추가 및 명칭, 위치, 면적 수정(안 별표1)
 공설묘지에서 공설묘원으로 명칭변경. 시설의 종류를 공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하고 봉안시설에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를 포함하는 등 현 시설에 맞게 수정함.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m ²)
공설묘지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사. 평창군 공설장사시설 표에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추가 등
 (안 별표2) -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관리비 등을 추가함.

□ 평창군 공설묘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공설묘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담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당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12. 8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764호, 가족복지과-44805(2025. 12. 5.)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9136(2025. 12. 4.)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9136(2025. 12. 4.)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44814(2025. 12. 7.)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346(2026. 1. 6.)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614(2026. 1. 8.)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함은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설공원묘지”라 함은”을 ““공설묘원”이라 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사시설중”을 “장사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설 공원 공동묘지”를 “공설묘원· 공동묘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장· 납골”을 “화장· 봉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로,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장소중**”을 “**장소 중**”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100미터이상**”을 “**1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로써**”를 “**경우로서**”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은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붕괴우려**”를 “**붕괴 우려**”로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제목 “(**분묘의 설치기간**)”을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분묘를**”을 “**분묘 및 봉안을**”로, “**합장 분묘**”를 “**합장 분묘 및 봉안**”으로 한다.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 ②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30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분묘,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자격)”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사망한 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를 “평창군 공설묘원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봉안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봉안 시설에 안치되는 자”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사람”으로,

“동시에 안치하는”을 “합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안시설에 안치되는 자**”를 “**공설묘원에 안치 또는 매장되는 사람**”으로, “**인접한 방안 시설**”을 “**합장하기 위해 인접한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방안시설**”을 “**방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방안시설**”을 “**방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연고자가 주민등록 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타 시설에 있던 유골함은 자연장지 또는 가족방안묘에만 안치가 가능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9. 가족방안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정하여 안치가 가능하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1개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아니 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을 “**제7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이하‘사용료 등’**”을 “**이하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감면 할 수 있다”를 “전액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기등”을 “장기 등”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호 중 “변경 된”을 “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 전”을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치하기 3개월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를 “제2항에 따른 개장 시”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명 할”을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골을”을 “사용자는 유골을”로 하며, “때에는 원상복구에”를 “때 군수는 원상복구에”로 하고, “개장 할”을 “개장할”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 중 “공설장사시설내”를 “공설장사시설 내”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다 하여야”를 “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 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반 하였”을 “위반하였”으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3조) 중 “평창군공설묘지관리사업소”를 “평창군 공설 묘원 관리사업소”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1항 중 “심의 · 정하기”를 “심의 · 조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 조정 한다”를 “심의 · 조정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공원 내의 금지 행위)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 안의 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 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제28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묘적부등)”을 “(묘적부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납골부”를 “봉안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m ²)
공설묘지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 읍·면(마을)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m ²)
평창읍 공동묘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둔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둔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주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항리 산 78번지	2,083
미탄면 공동묘지	미탄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탄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탄면 울치리 산 59번지	3,273
	미탄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탄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명 칭	위 치	면 적(m ²)
방림면 공동묘지	방림면 방림리 산 145번지	1,785
대화면 공동묘지	대화면 상안미2리 산 571-1번지	5,488
봉평면 공동묘지	봉평면 평촌2리 산 40번지 봉평면 유포2리 산 398번지 봉평면 흥정리 산 13번지 봉평면 유포1리 산 89번지 봉평면 원길1리 산 249-1 봉평면 덕거2리 산 173번지	19,834 9,917.4 7,240 5,355 14,876 19,834
용평면 공동묘지	용평면 속사2리 산 128-1 용평면 노동리 산 175번지 용평면 백옥포리 산 28번지	14,281 3,372 2,642
진부면 공동묘지	진부면 하진부5리 산 3번지 진부면 하진부6리 산 16번지 진부면 상진부2리 산 27번지 진부면 송정2리 산 309번지 진부면 두일리 산 66번지 진부면 거문리 산 84번지 진부면 신기리 산 23번지 진부면 마평리 묘지 37번지	24,793 46,017 8,179 14,083 11,207 7,676 3,669 5,928
대관령면 공동묘지 <개정 2006.7.7 : 시행일 2007.9.1>	대관령면 용산리 산 229번지 <개정 2006. 7. 7: 시행일 2007.9.1>	3,305.8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 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공설묘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담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당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 읍·면(마을) 공동묘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분 묘 (매 장)	단 장		4,000	4,000	-
	합 장		6,000	6,000	-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환급기준(제17조 관련)

사용경과기간	환급기준	비고
1년 미만	사용료 등의 70%	
1년 이상 ~ 3년 미만	사용료 등의 50%	
3년 이상 ~ 5년 미만	사용료 등의 40%	
5년 이상 ~ 7년 미만	사용료 등의 20%	
7년 이상 ~ 10년 미만	사용료 등의 10%	
10년 이상	환급 없음	

※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장사시설	공설묘지 (단장, 합장)	단지	단	번
	가족봉안묘	단지	단	번
	봉 안 담 (단장, 합장)	-		-
	봉 안 당 (단장, 합장)	-		-
사망자	성명			성 별
	생년 월일			사용연월일
신청자	성명			사망자와 관 계
	생년 월일			연 락 처
	주소			
금액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p>「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사용료·관리비)을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평창군수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설묘역시설 신고필증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
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
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
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평창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
직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다
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
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 안
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 3.·4. (생략)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
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특별
자치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
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

----- 공설묘원·
공동묘지-----

-----.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

-----.

1. --- 구역 안-----

2. 화장·봉안-----

- 3.·4. (현행과 같음)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
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역 안-----
-----.

② 제1항에 따라

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별표2에서 개인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2. (생략)

② 영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에서 그 밖에 지

-----.

③ -----구역 안

-----.

제5조(개인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 봉안시설 -----
----- 장소 중 -----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향평가 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년 이내-----

3. -----
---- 붕괴 우려 -----

제7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②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30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분묘, 봉안담, 봉안당, 가족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

봉안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분묘 및 봉안을 -----

----- 합장 분묘 및 봉안 -----
-----.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10조(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사망한 사람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망한 사람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

3.·4. (생략)

5.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6.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 된 배우자가 인접한 봉안시설을 사전에 임대하는 경우

7.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8.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신설>

2. -----
평창군 공설묘원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봉안되어있는 사람

3.·4. (현행과 같음)

5.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사람-----
-- 합장하는 -----

6. ----- 공설묘원에 안치 또는 매장되는 사람-----
합장하기 위해 인접한 시설-----

7. -----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8. -----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타 시설에 있던 유골함은 자연장지 또는 가족봉안묘에만 안치가 가능하다.

9. 가족봉안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정하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제11조(묘지의 면적)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기본 점유면적은 6.75제곱미터(1.5m×4.5m)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 할 수 있다.

제12조(분묘의 구조등) ①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한다.

② 분묘의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4조(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안치가 가능하다.

10. -----

-- 사람-----

<삭 제>

<삭 제>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
----- 사람은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권의 소멸)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사시설
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
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 ----- 1개월 이내
----- 사유 없이 -----
----- 아니한 -----

2. ----- 제7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

<삭 제>

제16조(사용료 등) ① -----
-----이하 “사용료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생략)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 설>

제1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장기 등 -----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

-----.

1. ----- 변경된 -----

2.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전에 사용자에게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통보 후 개장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2. (현행과 같음)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

-----.

② ----- 제1항에 따른 -----

-----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치하기 3개월 전 -----

-----.

③ 제2항에 따른 개장 시-----

-----.

제2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
을 명할 수 있다.

②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설장사
시설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
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 4. (생략)

제23조(관리사무소설치) 묘지조성과

-- 명할 -----.

② 사용자는 유골을 -----
개장할-----
-----때
군수는 원상복구에-----
-----.

제21조(위탁운영) ----- 공설장사
시설 내 -----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
----- 기간 중 -----
----- 다하여야 ----.
② ----- 관계 법령 -----
----- 따른 -----
-----.

제23조(위탁의 취소등) -----
각호의 어느 하나-----

-----.

1. -----
----- 위반하였---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관리사무소설치) -----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 안의 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 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제28조(권한위임)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생략)

제29조(권한위임) (현행과 같음)

제3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25,678
평창군 공설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공설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 읍·면(마을)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읍 공동묘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동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동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추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합리 산 78번지	2,083	
미란면 공동묘지	미란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란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란면 읍치리 산 59번지	3,273
	미란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란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관련)

□ 평창군공설묘지(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분 묘 (매장)	단장 (6.75㎡)	2,000,000	1,520,000	480,000
	합장 (9.9㎡)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시설	봉안당 1구당	400,000	400,000	-
	봉안당 1구당	600,000	600,000	-

※ 사용년한 : 30년 사용기준임.

□ 읍·면(마을) 공동묘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 리 비
분 묘 (매장)	단장 (6.75㎡)	4,000	4,000	
	합장 (9.9㎡)	6,000	6,000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
공설묘지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 읍·면(마을)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읍 공동묘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동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동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추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합리 산 78번지	2,083	
미란면 공동묘지	미란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란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란면 읍치리 산 59번지	3,273
	미란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란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 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 리 비	
공설묘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당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당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 읍·면(마을) 공동묘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 리 비
분 묘 (매 장)	단 장	4,000	4,000	-
	합 장	6,000	6,000	-

<신 설>

<신 설>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환급기준(제17조 관련)

사용경과기간	환급기준	비고
1년 미만	사용료 등의 70%	
1년 이상 ~ 3년 미만	사용료 등의 50%	
3년 이상 ~ 5년 미만	사용료 등의 40%	
5년 이상 ~ 7년 미만	사용료 등의 20%	
7년 이상 ~ 10년 미만	사용료 등의 10%	
10년 이상	환급 없음	

※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장사시설	공설묘지 (단장, 합장)	단지 단 번	
	가족봉안묘	단지 단 번	
	봉안당 (단장, 합장)	- -	
사망자	성명		성 별
	생년 월일		사용연월일
신청자	성명		사망자와 관 계
	생년 월일		연 락 처
	주소		
금액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p>「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사용료·관리비)을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평창군수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설묘역시설 신고필증 1부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관계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립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 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평창공설묘원 시설비(구축물)

- 자연장지 조성 47,800천원 ※ 5개년 소요 예상 총사업비

→ 잔디 시공 $800\text{m}^2 \times 10,500\text{원} \times 2\text{단} = 16,800\text{천원}$

→ 추모로 설치 $250\text{m}^2 \times 62,000\text{원} \times 2\text{단} = 31,000\text{천원}$

- 가족봉안묘 기초공사 2,000,000원 $\times 20\text{기} = 40,000\text{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연락처	(033) 330 - 2124